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2024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21인	2인
재적임원	20인	2인
참석임원	17인	2인

- 1. **일시:** 2024년 10월 29일(화) 11:00~12:10 (회의소집 통보일 : 2024년 10월 21일)
- 2. **장소:** 목원대학교 본부 4층 도의서홀

- 기도회:** 이사장의 사회로 찬송가 383장을 부르고 이철 이사가 기도한 후 기도회를 마침.
- 임원점명:** 임광순 서기 이사가 임원을 점명하니 재적임원 22인 중 19인 참석함.

3. 임원 출석현황

· 참석 임원

이사(17인): 유명완 이철 이희학 정동준 강석근 강판중 서동원 유명돈 이요한 지태열 김규태
김정수 김정철 여두홍 임광순(원격화상회의 참석: 박정민 이찬우)

감사(2인): 지광식 강민구

· 불참 임원

이사(3인): 김동현 이종복 최선길

- 개회선언:** 이사장이 성원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
- 이사장 인사:** 이사장이 일어서서 참석해주신 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함.
- 총장 보고:** 총장이 배포한 총장업무보고(별첨)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함.
- 회순통과:** 이사장이 회의 순서를 물어보니 회의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동의받아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 의결함.

<간서명> 강판중 임광순 이 | 임

□ 각 위원회 보고: 1호안 법인정관 개정, 2호안 법인 규정 및 학교 규정 개정은 준비된 정관 및 규정 개정(안)(별첨)과 함께 규정소위원회 위원인 강판중 이사가 설명함. 법인정관 제43조의2(정년)은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목원대학교의 총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대학 발전을 위하여 총장의 정년에 대한 단서를 추가하기 위해 정관 및 시행세칙에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로 신설하고자 함. 그러나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의견내용은 - 총장의 정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총장의 연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현 4년 단임제 총장은 공약 실천 및 대학 정책 시행에 짧은 시간임. 정년이 늘어나면, 책임경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나, 100세 총장이 나올 수 있음. 급변하는 사회에서 100세 총장과 20세 학생 사이에는 생각의 괴리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다만, 총장의 정년은 임기 시작 전 65세로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관 및 시행세칙의 기존 단서 신설 안건을 올린 내용인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를 “다만, 총장의 정년은 임기 시작 전 만65세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첨자료를 통해 보고함. 제 89조(법인의 사무조직) 개정은 법인의 사무조직 관리자의 정년과 법인의 인사 임명권자를 이사장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제96조(정원) 개정은 현재 일반직 정원에 포함된 무기계약직은 일반정규직과 보수 및 직급체계가 다른 직군으로 일반직원 정원에 포함됨에 혼동이 있어 (별표2) 일반직원 정원에서 무기계약직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을 보고함.

법인 규정 및 학교규정 개정 중 정관시행세칙 제11조(정년)은 정관에 관련된 시행세칙 조항 내용을 합치하기 위하여 정년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고자함.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지원자격)은 정관 및 시행세칙 조문에 따라 총장 자격의 정년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의 「총장후보 대상자의 자격」을 따르고자 함. 직원인사규정 제31조(휴직기간)은 2023~2024년도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정비하고자 함.

법인정관 및 규정(법인정관시행세칙, 총장추천위원회 운영세칙, 직원인사규정) 개정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3차례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보고함.

4호안은 재정관리소위원회 위원인 김정철 이사가 교비회계를 법인사무국장 이 법인회계에 대하여 설명함. 2024학년도 추가경정예산(2차)과 관련하여 배포된 자료(별첨)를 통해 교비회계(목원대학교) 및 법인 일반업무회계/수익사업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요 사항과 증감 내용 등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며 이상이 없음을 보고함.

5호안, 6호안은 준비된 자료(별첨)와 함께 기획 및 자산소위원회 위원인 김규태 이사가 보고함. 5호안 수익용 기본재산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사용(정상표지석 설치)승인에 관한 건은 우리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중 대덕구 장동 산108-1번지의 일부분을 대전시에서 대전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간서명>	강 판 중	김 판 중	이 인
-------	-------	-------	-----

「5대 명산 정상 표지석 설치사업」으로 해당 토지사용 동의 요청을 하였으며, 토지 소유자가 표지석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하면 토지사용자가 요구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이상없음을 확인하였기에 자료(별첨)를 첨부하여 안건 상정하였음을 보고함.

6호안은 목원대학교 씨름훈련장 건축 및 취득에 관한 사후 승인에 관한 건으로 우리 대학의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씨름특기자로 씨름 선수를 선발함에 따라 2022학년도 제1차 건축위원회(2022. 3. 10.)에서 씨름훈련장 건축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으며, 현재 2024년 8월 27일 완공하고 건물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임.

그러나 건축(증축)된 씨름훈련장은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으로 그 건축에 앞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하나, 당시 기획예산처 기획과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씨름훈련장 건축이 진행되었음.

이에 기획과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사후 승인에 관한 건으로 이사회 안건 상정하였음. 기획 및 자산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사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고 해당 건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씨름훈련장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자문에 따라 사후 승인 하되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음을 보고함.

□ 전 이사회의록 통과: 이사장이 전 이사회의록 통과에 대하여 물으니 전 이사회의록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 의결함.

4. 회의 안건

- 가. 제 1호의 안: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나. 제 2호의 안: 법인 규정 및 학교 규정 개정에 관한 건
- 다. 제 3호의 안: 임원(이사, 개방이사) 선임에 관한 건
- 라. 제 4호의 안: 2024학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건(법인회계, 교비회계)
- 마. 제 5호의 안: 수익용 기본재산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사용(정상 표지석 설치) 승인에 관한 건
- 바. 제 6호의 안: 목원대학교 씨름훈련장 건축 및 취득에 관한 사후 승인에 관한 건
- 사. 제 7호의 안: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에 관한 건
- 아. 제 8호의 안: 직원 제1징계위원회 위원 변경에 관한 건

5. 보고 안건

- 가. 제 1호의 안: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대금 활용에 관한 건
- 나. 제 2호의 안: 기타보고에 관한 건

<간서명>	김관중	이광호	이	인
-------	-----	-----	---	---

6. 안건 심의

제 1호의 안: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학교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규정소위원회로부터 이상 없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음을 설명함.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원안(첨부1)대로 처리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의결함.

제 2호의 안: 법인 규정 및 학교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법인 규정 및 학교 규정에 관한 건은 규정소위원회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음을 설명함.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정관시행세칙,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세칙, 직원인사규정은 원안(첨부2)대로 처리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같이 의결함.

제 3호의 안: 임원(이사, 개방이사) 선임에 관한 건

임원(이사, 개방이사) 선임에 관한 건은 법인사무국장이 자료(별첨)를 통해 선임 배경과 추천과정에 대해 설명함.

임원(이사)선임은 법인 정관 제 24조에 ①항 1호와 제 23조 ④항에 의거 직권상 이사를 3연회 현직감독(남부, 삼남, 중부)으로 이사를 선임해야하나 중부연회에서는 파송하지 않겠다는 의견에 따라 남부, 삼남연회만 우선 선임하게 되었음을 설명함.

이사장이 임기 만료된 연회 파송이사(현직감독)의 선임에 대해 거수를 통해 선임 의결할 것을 문자 이사들 만장일치 동의하여 거수로 투표를 진행함.

1. 남부연회 김동현 이사 후임으로 이용 후보자 선임_ 만장일치 전원 17인 동의
(임기: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감독재임기간))
2. 삼남연회 정동준 이사 후임으로 박준 후보자 선임_ 만장일치 전원 17인 동의
(임기: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감독재임기간))

임원(개방이사) 선임에 관한 건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김규태, 이찬우 개방이사의 후임이사 후보자로 반경, 오종, 이영, 이찬 4명을 추천하였기에 4명의 후보자의 이름이 표기된 투표용지에 2명을 투표하여 다득표자 2명을 임기 만료되는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하여 결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함. 영상 참석한 박정민 이사는 문자로 투표하기로 하고 당사자인 이찬 이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이사들이 만장일치 동의하고 지광식 감사 및 법인사무국장 검표위원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함.

※ 투표결과: 오종 16표, 이찬 14표, 이영 2표, 반경 0표(총 32표)

3. 개방이사 김규태 이사 후임으로 오종 후보자 선임_(임기: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교육부 승인시))

<간서명> 김판용 이광호 이영

4. 개방이사 이찬우 이사 후임으로 이찬 후보자 선임_(임기: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교육부 승인시))

연회 파송 이사로 이용 , 박준 , 개방이사로 오종 , 이찬 선임 의결되었음을 선언함.

제 4호의 안: 2024학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건

이사장이 2024학년도 추가경정예산(2차)에 대하여 재정소위원회 및 법인사무국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상 없으므로 검토의견을 받았음을 설명함.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2024학년도 추가경정예산(2차)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 만장 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함.

(단위: 원)

구	분	2024학년도 추가경정예산(2차)	2024학년도 추가경정예산(1차)	증 감 액
법인회계 ①	일반업무 회계	697,600,000	625,626,000	71,974,000
교비회계 ②	등록금 회계 ①	52,689,683,000	52,996,000,000	-306,317,000
	비등록금 회계 ②	145,040,557,000	137,569,334,000	7,471,223,000
	내부거래 제거 ③	1,000,000	1,000,000	0
	총 계 ①+②-③	197,729,240,000	190,564,334,000	7,164,906,000
내부거래 제거 ③	430,000,000	360,000,000	70,000,000	
합 계 ①+②-③	197,996,840,000	190,829,960,000	7,166,880,000	

(단위: 원)

구	분	2024학년도 추가경정예산(2차)	2024학년도 추가경정예산(1차)	증 감 액
법인회계	수익사업 회계	1,614,133,000	1,567,980,000	46,153,000

<간서명> 김관중 이광호 이보현

제 5호의 안: 수익용 기본재산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사용(정상 표지석 설치) 승인에 관한 건

이사장이 수익용 기본재산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사용 승인의 건은 기획 및 자산소위원회 회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음을 설명함.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원안(첨부3)대로 처리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의결함.

제 6호의 안: 목원대학교 씨름훈련장 건축 및 취득에 관한 사후 승인에 관한 건

이사장이 목원대학교 씨름훈련장 건축 및 취득에 관한 사후 승인에 관한 건은 기획 및 자산소위원회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음을 설명함.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원안(첨부4)대로 처리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의결함.

제 7호의 안: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변경에 관한 건

오수철 사무국장이 법인정관 제59조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4조 및 교원단체협약서 제 32조(위원회 참여)에 따라 위원으로 참여하던 교원 노조 대표2인() 을 대신 하여, 총장추천인 2명 () 으로 변경해달라는 교무과의 요청이 있었음을 설명함.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이사장에게 위임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함.

연번	직 위	소 속	성 명	임 기
1	교수			
2	교수			

제 8호의 안: 직원 제1징계위원회 위원 변경에 관한 건

사무국장이 법인 정관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4조(조직 및 관할)에 의거, () 면직한 () 위원을 면하고 () 위원의 임명요청이 있어, 안전으로 상정함을 설명함.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함.

연번	직 위	소 속	성 명	임 기
1	직원			

<간서명> 김관중 임광호 이인범

7. 보고 사항

제 1호의 안: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대금 활용에 관한 건

이희학 총장 및 기획과 과장이 현재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대금 활용에 관하여 현재 진행상황 및 추후 구성된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대금 활용TF팀과 함께 의견수렴 및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활용할 예정임을 설명하며 배포한 자료(별첨)를 통하여 보고함.

이사장이 소중한 학교 자산을 학교측에서 장기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 또한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대금 활용TF팀을 충분히 활성화하여, 학교 측에서 안을 가지고 기획 및 자산관리 소위원회에 자세하게 보고도 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함.

제 2호의 안: 기타사항에 관한 건

더 이상 보고할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마칩.

□ 간서명위원 선출의 건

이사장이 회의록의 간서명을 위한 간서명 위원 3명은 이사장에게 위임해줄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이사들의 동의로 이사장은 이요한 이사, 강판중 이사, 임광순 이사를 간서명 위원으로 선정함.

□ 폐 회

강판중 이사의 폐회 동의와 강석근 이사의 재청이 가납되어 폐회함.

2024년 10월 29일

이사장 유명완 *유명완*

이 사 임광순 *임광순*

이 사 이희학 *이희학*

(영 상 참 석) 이 사 박정민 *박정민*

(영 상 참 석) 이 사 이찬우 *이찬우*

이 사 김정철 *김정철*

<간서명>	<i>김판중</i>	<i>임광순</i>	<i>이요한</i>
-------	------------	------------	------------

이 사 이 철 이 철
 이 사 정동준 정동준
 이 사 강석근 강석근
 이 사 지태열 지태열
 이 사 서동원 서동원
 이 사 유병돈 유병돈
 이 사 김규태 김규태
 이 사 김정수 김정수
 이 사 여두홍 여두홍
 이 사 강판중 강판중
 이 사 이요한 이요한
 감사 지광식 지광식
 감사 강민구 강민구

<간서명>	강판중	김광식	이요한
-------	-----	-----	-----